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서울특별시와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및 사단법인 한성협동회 서울특별시지부간에 체결한 제2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03
----------	-----

2000년 11월 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청 제출

나. 회부일자 : 2000년 9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1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2000년 11월 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최재범)

가. 제안이유

○ 일반시민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사용시에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도로관리사업소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사용시 건설기계의 작업장소를 이동하고자 할 때 종전의 “도로관리사업소장 승인”에서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신고”로 간소화하여 임차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12조제2항)

○ 임차인이 임차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천재지변·공익사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인에게 건설기계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결정됨이 타당함으로 삭제함. (안 제12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용훈)

□ 내용별 검토

○ 조례 제12조제2항의 개정내용은 도로관리사업소 보유 건설기계를 임대 받은 임차인이 작업조건의 변경 등에 따라 사용중인 건설기계의 작업 장소를 이동하고자 할 때의 절차를 종전의 “사업소장 승인”에서 “사업소장에게 신고”로 간소화하여 임차인의 건설기계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 같은 조례 제3항의 “임차인의 사용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천재지변·공익사업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사업소장이 해당 건설기계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유사시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임대 건설기계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규제완화를 요청한 2000. 7. 13차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기타 사항은 1999. 3. 15차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건설안전관리본부산하 사업소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건설관리사업소”를 “도로관리사업소”로 일치시키고, 징수 건설기계 사용료의 일반회계 납부를 의미하는 “잡수입”을 다른 법령 등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세입조치”로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음.

□ 검토의견

○ 시 산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의 임차사용 절차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규정을 완화 또는 삭제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